

공 고

사천시 공인조례 제6조(공인의 등록)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동 조례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9월 28일

사 천 시



1. 사용개시일 : 2018. 9. 28.
2. 등록 사유 :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(하나넷) 시스템에서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용
3. 전자이미지공인 내역

구분	공 인 명	서체 및 규격(cm)	인 영	비고
전자이미지 공인	사천시장의인	훈민정음 해례본체 (3.0×3.0)		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(하나넷) 시스템